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34호 2017. 1. 12(목)

## 차 례

### 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8호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폐지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1

##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- 78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월 12일

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## 1. 폐지 이유

-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

## 2. 주요 내용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 전문 폐지

## 3. 의견 제출

- 이 폐지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032-560-4154) 또는 Fax(032-560-2720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(안) 1부.

##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

### 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폐지이유

-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함.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폐 지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해당 없음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별지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
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

[1988.05.01 규칙 제19호]

(일부개정) 2007.09.28 조례 제 898호

(일부개정) 2016.07.08 조례 제1413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7.9.28, 2016.7.8)

**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**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(개정 2016.7.8)

1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(개정 2016.7.8)
2.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(개정 2016.7.8)

**제3조(재정보증)**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7.8)

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**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,000만원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07.9.28, 2016.7.8)

**제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**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(개정 2016.7.8)

**제6조(보험료의 지급)**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7.8)

**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**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 2007.9.28, 2016.7.8)

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7.8)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7.8)

**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**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7.8)

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(개정 2016.7.8)

### 부칙

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(2007.9.28 조례 제89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(2016.7.8 조례 제1413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지방회계법 시행령

**제5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**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(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

## 실·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실 · 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 · 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17.1.12. ~ 2.1. ○ 내 용 - 의견수렴	-	-	-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17.1.12. ~ 2.1. ○ 내 용 - 구보게재 - 인터넷	-	-	-